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331>

JCCT 2024-7-36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부 위원회의 제척 규정 비교 연구

Government Commission Studies Exclusion Rules to Improve Fairness

이재훈*

JaeHoon LEE*

요약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제척,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이해관계, 배제규정

Abstract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 of government committees in Korea provide for a system called exclusion. Exclusion is a system that excludes a member of a committee from deliberating or voting on a matter or agenda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a special procedure before deliberating or voting on the matter or agenda. This is because exclusion of a member from deliberation and voting is not only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issue or matter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but is also a very important value for the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process. However, in practic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at a member who ha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is naturally incapable of executing the duties of the matter or agenda just because he or she ha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Prior to the overhaul of the disqualification rules for committee members in the statutes,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disqualification rules that are virtually dead in advance or to revise the rules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without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disqualification rules that are codified in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isqualification rules of nine committees in the domestic statutes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categorized the disqualification rules.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future legislative proposals to improve the rules on the exclusion of commissioner.

Key words : Exclusion, Committee, Conflict of Interest, Exclusion Rules, Disqualification

*정희원,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변호사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6일

Received: May 12, 2024 / Revised: May 30, 2024

Accepted: June 16, 2024

*Corresponding Author: jaehoonlee@sungshin.ac.kr
Dept. of Law, Sungshin Women's Univ, Korea

I. 서론

‘공정성’, 또는 ‘공정한 사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은 아니다. 물론, 공정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공정성은 경제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정(fairness)이란 용어는 흔히 공평(equity)이나 평등(equality)이란 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를 구별하면 공정은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이뤄져 아무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안전이나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전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전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1].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전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2].

따라서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위원이고 또한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자가 당해 절차에서 그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3].

실제로 위와 같이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자가 참석하고, 해당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도 참석하여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와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본다[4][5][6].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전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7][8]. 이에 제척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 너무 많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위원회 별로 위원 제척 사유를 비교 분석하여 제척 사유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9][10].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법률, 시행령) 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하여,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의 공정성이 보다 더 확보되길 기대한다.

II. 정부조직상 위원회의 제척 비교

1. 개요

우선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함께 다음 각 위원회 조직을 정부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각호 중에 위원회로 구성되고 있는 총 6개의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제척 규정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각 6개의 위원회의 근거 법률과 위원회명을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표 1. 「정부조직법」 상의 위원회

Table 1. Committees under the government org. act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2. 각 위원회의 위원 제척 규정 연혁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방통위의 위원에 관한 제척 규정을 두고 있다. 2019년 12월 10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개정 사유는 ‘당해’라는 표현을 ‘해당’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였는바, 2008년 2월 29일자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척 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정위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두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공정위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었다.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전부개정과 함께 제44조에 처음으로 공정위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신설한다. 그리고 1996년 12월 30일자로 해당 제44조는 전면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제척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한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일부 개정하면서 2005년 4월 1일부터 제척 사항 중 제2호를 일부 수정하고 제6호를 추가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05년 7월 29일 제정되어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법률이다. 「부패방지법」 제정 당시에는 별도의 제척 규정은 없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에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있었다. 이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제정 및 시행되면서 권익위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제18조에 운용된다. 이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16일 개정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익위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일부 수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위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지 아니하고, 회의에 관한 소집 등의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전신이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척 규정은 간단히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개정 및 시행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재의 제척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제척 조항에 큰 영향은 없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보위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정비되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보위의 위원의 제척 규정은 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보위의 위원의 규정과 크게 변화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원의 제척 근거가 있다. 참고로 원자력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 규제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 규제가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었고, 특히, 주관 부처도 2개였다. 이에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되었고, 이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안위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과 안전으로 분리하는 분법이 실시된다. 2011년 7월 2일자로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자로 시행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라는 특성에 따라 위원들의 제척 규정을 구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조문에 축조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형태로 위원회의 위원들의 제척 관련 규정을 넣어두고 차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두겠다는 취지가 더 컸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 제척 비교 분석

개별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각 법률의 조항을 분석하여, 각 제척 사유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척 사유를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 친족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배우자와 친족에 대해서는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였다.

두 번째는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해 과거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안전이나 사안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경우 해당 대리인을 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세 번째는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련한 법인·단체에 재직하 임·직원인 경우,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네 번째는 해당 안전이나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사항에 관여한 경우, 조사, 수사, 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다섯 번째는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어떤 형태라도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 여타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단체에서 위원으로 추천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마지막은 위원이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이 크게 6가지, 세부적으로는 18개로 세분화한 위원회별 각 제척 사유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 2. 각 위원회의 제척 사유 규정 비교
Table 2. Compare each committee's exclusion rules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보위	원안위
본인	○	○	○	○	○	○
현재 배우자	○	○	○	○	○	○
과거 배우자	○	○	○	×	○	○
현재 친족	○	○	○	○	○	○
과거 친족	○	○	○	×	○	○
증언	○	○	○	×	○	○
감정	○	○	○	×	○	○
대리인	○	○	○	×	○	○
현재 임직원	×	×	×	×	×	×
과거 임직원	×	×	×	×	×	×
처분 관여	○	○	×	×	×	○
조사 수사등	×	×	○	×	×	×
부작위	○	○	×	×	×	○
지원	×	×	×	×	○	×
자문 고문등	×	○	○	×	○	×
추천	×	×	×	×	×	×
이해 관계	×	×	×	×	×	×
위원장 인정	×	×	×	×	×	×

4. 소결

해당 안전이나 사안의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와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된다는 사유는 6개의 위원회가 모두 동일하였다.

한편, 금융위의 경우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전이나 사안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지 않았고, 친족이었던 자에서도 동일하였다. 참고로 금융위를 제외한 5개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는 반면, 금융위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친족 관계를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위는 증언, 감정, 대리인에 관해서도 제척 규정이 없었다.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현재 또는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척 사유는 6개의 위원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처분 관여나 부작위 등의 사항은 법관의 제척 사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반 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로 가져온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제척 사유이다. 다만, 6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는 조문상 제척 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다.

개보위만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이 해당 안전이나 사안에 관한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이다. 자문, 고문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제척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동수를 이루었다.

추천, 이해관계 관련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제척 규정은 모든 위원회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은 제척 신청이라는 것 없이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하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제척 규정 비교에서 일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바, 해당 내용도 비교표에 포함시켰다.

III.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제척 비교

1. 개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기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위원회는 더 많은 형태로 입법되어 있다.

이에 제척 사항에 대한 폭넓은 비교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형태인 위원회의 위원 제척에 관련한 법률도 일부 비교해보았다. 많은 개별 위원회의 위원별 제척 규정이 있는바, 이에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의 법령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의 위원회의 근거 법률과 위원회명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

표 3.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위원회
 Table 3. Committees such as committees or boards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위’)

2. 각 위원회의 위원 제척 비교 분석

개별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각 법령의 조항을 분석하여, 각 제척 사유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척 사유를 분류할 수 있었다. 앞선 표2와 같이 크게 6개의 분류, 세부적으로는 18개로 세분화한 위원회별 각 제척 사유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 표4이다.

표 4. 각 위원회의 제척 사유 규정 비교 2
 Table 4. Compare each committee's exclusion rules 2

	운영위	심의위	조정위	선정위	전문위
본인	○	○	○	○	○
현재 배우자	×	○	○	○	○

과거 배우자	×	○	○	○	○
현재 친족	○	○	○	○	○
과거 친족	○	○	○	○	○
증언	○	○	○	×	○
감정	○	○	○	×	○
대리인	○	○	×	×	○
현재 임직원	×	○	×	○	○
과거 임직원	×	○	×	○	○
처분 관여	×	×	×	×	×
조사 수사등	×	×	○	×	×
부작위	×	×	×	×	×
지원	○	×	×	×	×
자문 고문등	×	○	○	×	○
추천	×	×	×	○	×
이해 관계	○	×	○	×	×
위원장 인정	×	×	×	×	○

3. 소결

운영위는 배우자에 대한 제척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 따르면 배우자도 친족의 범위이므로 큰 공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운영위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

는 단체 등이 조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이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각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에 제척이 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이므로 해당 부처에 사안일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심사에 대한 결정권자만을 제척하는 것인지, 해당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를 제척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선정위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사안에 관한 증언, 감정, 대리인 등을 위원이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선정위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를 제척 사유로 두고 있었다.

전문위의 경우에는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제척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불공평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미리 법률로 유형화하여 특정 위원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판단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V. 결 론

제척 조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의 법관의 제척 이유를 그대로 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로 가져오면서 내용이 정확히 적용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척 사유를 설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제척 사유를 설정하는 과정은 정부조직상의 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개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위원 제척 규정의 정비 이전에 각 위원회의 위원 제척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는 제척 규정을 제거하거나 미리 법률로 유형화하는 제척 규정의 의도와는 달리 해

석이 요구되는 제척 규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 법령(법률, 시행령) 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였다. 제척 사유에 관하여 해당 심의 사안이 ① 위원 본인, 배우자,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증언,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③ 해당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인 경우, ④ 위원이 처분에 관여하거나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 ⑤ 해당 기관에 지원을 받거나 자문, 고문 관계, 추천받아 위원이 된 경우, ⑥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사항인 경우 등으로 카테고리화하였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W. Y. Jon, "Reexamination of Grounds for Judicial Recusal", *Justice of Korean Society of Law*, Vol. 173, pp.67-106, Aug 2019. <https://doi.org/10.29305/tj.2019.08.173.67>
- [2] H. Y. Kim, "Disqualification and Recusal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Justice of Korean Society of Law*, Vol. 9, No. 3, pp.102-127, Oct 2014.
- [3] S. H. Dong and H. R. Ahn, "A Comparative Analysis of Fact-Checking News Fairness in South Korean Broadcast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3, pp. 495-508, Ma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495>
- [4] M. J. Kwon and K. J. JEONG, "A Case Study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Institutions Located in Daedeok Innopol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1, pp. 317-326, Feb 202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317>
- [5] Zhi-Xiao Ye, M. C. Choi and S. J. Kim, "A Study on the Intervention of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s in Community Governance Model - Based on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Product in Attribute Perspective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8, No. 3, pp. 84-89, Sep 2020. <https://doi.org/10.17703/IJACT.2020.8.3.84>
- [6] J. C. Hah, "Vitalization of Judicial Disqualification through Positive Consideration on Whether Judge'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be Questioned", *Seoul Law Review* Vol. 22, No. 3, pp. 631-660, Feb 2015.
- [7] S. T. Kim, "A Study on the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 of Enforcement Officers in Civil Execu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4, No. 3, pp. 1067-1077, Jun 2023. <http://dx.doi.org/10.22143/HSS21.14.3.74>
- [8] J. C. Park, "Management of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Additional Job Holdings of the National Assemblymen: Reform Directions and Issu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 9, No. 3, pp. 1-23, Sep 2005.
- [9] D. R. Lee, "Ausschluss von Richtern und Mitberechtigter", *Chung-Ang Law Review*, Vol. 16, No. 3, pp. 251-274, Sep 2014.
- [10] H. W. Cho,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Ausschließungsgrund von Richtern in Zusammenhang mit dem Bereich der Verwandtschaft und Schwägerschaft",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ersity*, Vol. 13, No. 3, pp. 523-549, Oct 2012.